KOSHA GUIDE

P - 96 - 2020

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

2020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- O 작성자: 유 철 진
- O 개정자: 전 풍 림
- O 개정자: 이 정 석
- O 개정자: 장 희
- O 제·개정 경과
  - 1995년 9월 기계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 - 1995년 10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0년 11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1차 개정)
  - 2000년 12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(제1차 개정)
  - 2008년 10월 화학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
  - 2008년 11월 총괄제정위원회 심의
  - 2012년 7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  - 2020년 12월 총괄 제정위원회 심의(개정, 법규개정조항 반영)
- O 관련 규격 및 자료
  - 국제노동기구(ILO)협약 174호 중대산업사고 예방제도
  - 미국 산업안전보건법(CFR) 1910.110 공정안전관리제도
- O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  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(www.kosha.or.kr)의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규격 및 자료, 법규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개정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: 2020년 12월

제 정 자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 공정안전에 관한 근로자 교육훈련 지침

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할 공정안전보고서 중 근로자 등의 교육계획(이하 "교육후련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이행하여야 할 근로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적용한다.

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공정안전교육훈련"이라 함은 사업주가 작성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교육훈련을 말한다.
  - (나) "도급"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.
  - (다) "수급인"이라 함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·건설·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,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.
- (2)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산업안전보건법, 동법시행령, 동법시행규칙 및 안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## 4. 교육훈련대상

교육훈련 대상은 사업장의 근로자, 관리감독자, 수급업체(수급업체를 포함한다)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(이하 "근로자 등"이라 한다) 등 공정안전과 관련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등이다.

# 5. 교육훈련의 종류

5.1 일반안전·보건교육훈련

일반안전·보건교육훈련은 산업안전보건법, 같은 법 시행령,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교육을 포함하다.

5.2 공정안전교육훈련

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안전자료, 위험성평가,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를 포함한 다.

5.3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

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은 화재·폭발 발생,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및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포함한다.

### 6. 교육훈련계획의 수립

- 6.1 사업주는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늦어도 당해년도 초에 확정하여야 한다.
- 6.2 안전관리자는 교육훈련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당해 부서의 교육훈련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- 6.3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(1) 교육훈련 목적, 범위, 대상, 방법 및 인원
  - (2) 교육훈련의 종류, 과정,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

- (3) 교육훈련시기, 횟수 및 시간
- (4)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
- (5)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
- 6.4 교육훈련계획의 작성 시에는 제8.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교육훈련 결과보고서 내용과 근로자 대표(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근로자 위원)의 의견을 적 절히 반영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# 7. 교육훈련의 실시

#### 7.1 일반사항

- (1) 교육훈련의 내용 및 시간은 시행규칙 제26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 다만, 비상조치훈련은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2) 교육훈련강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, 관리감독자,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안전 보건담당자, 강사요원 교육과정 이수자, 산업보건의, 산업안전지도사, 산업보건지 도사, 공정기술자, 정비기술자, 고급운전자, 기계·전기기술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내외의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한다.
- (3)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적합한 교재와 적절한 교육훈련장 비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. 작성된 교재는 안전관리자, 보건관리자, 등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.
- (4) 사업주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설비·장비 및 기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(5) 교육훈련은 학습, 강의, 시청각교육, 토의, 현장실습, 전산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- (6) 교육훈련은 가능한 한 실제상황에 가까운 조건 하에서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7.2 일반안전 · 보건교육훈련

근로자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·보건교육), 제110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), 제114조(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)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 조(교육시간 및 교육내용), 제156조 내지 제171조와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·내용 등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1호)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된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 7.3 공정안전교육훈련

- (1) 공정안전교육훈련은 공정의 특성·설비의 복잡성·취급물질의 위험성·운전상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담당 직무별로 실시하되, 특히 화학설비 등의 설치, 개·보 수, 촉매 교체 등 주요 위험시설의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시 켜야 한다.
- (가) 설비 전 공정에 관한 공정안전자료
- (나)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·피해 최소화 대책
- (다) 안전운전계획
- ① 안전운전지침서
- ②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, 유지계획 및 지침서
- ③ 안전작업허가
- ④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
- ⑤ 가동전 점검지침
- ⑥ 변경요소 관리계획
- ⑦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
- ⑧ 기타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
- (라) 비상조치계획
- ① 사고발생 시 각부서 ·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
- ②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
- ③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계획
- ④ 주민홍보계획
- ⑤ 기타 비상조치 관련사항

- (2)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실시하되, 매 3년마다 1회 이상 정기 적으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신규설비 또는 변경된 공정·설비에 대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은 설비의 시운전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#### 7.4 수급업체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

- (1)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일상적으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급인인 사업주가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수급업체의 근로자를 참여하게 하거나 또는 다음의 내용을 실시할 수 있다.
- (가) 화재·폭발 발생, 유해위험물 누출 등 비상시의 조치절차 교육훈련
- (나) 수급인인 사업주가 행하는 교육훈련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, 비상조치 훈련 지원 등
- (2) 사업장내에서 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 근로자

임시로 행하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교육훈련은 도급 발주부서 등의 관리감독자 가 작업 전에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소정의 교재를 제공하고, 이를 수급인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- (가) 작업지역 내에서 지켜야 할 안전수칙
- (나)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
- (다) 안전작업허가서 발행대상 작업인 경우 그 절차와 안전조치사항
- (라) 동 작업과 관련된 동종 유사재해 사례
- (마) 작업시행 이전에 작업자들에게 화재, 폭발, 독성물질 누출 위험과 예방에 관한 교육
- (바) 비상시 조치사항
- (3)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
- (가) 임시로 행하는 일용근로자 교육훈련은 매 작업전 당해 관리감독자가 제7.4항 (2)호에서 규정한 내용 중 당해 작업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
- (나)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제7.4항 (2)호에서 규정한 내용을 작업장 특성에 맞게 특별교육을 추가로 실시하여야 한다.
- (4) 수급업체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도급업체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한다.
- (가) 교육훈련 목적, 범위, 대상, 방법 및 인원
- (나) 교육훈련의 종류, 과정,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내용
- (다) 교육훈련시기, 횟수 및 시간
- (라)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
- (마) 교육훈련성과 측정 및 평가방법
- (바) 사업주의 의무사항
- (사) 도급업체 사업주의 의무사항
- (아) 계획서 작성 및 승인 등
- (자) 교육훈련 결과 기록보존
- (차) 기타 도급업체와 협조사항

### 8. 교육훈련의 평가 및 사후관리

#### 8.1 교육훈련의 평가

- (1) 교육훈련 실시 후에는 시험, 질문, 관찰 등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성과를 측정하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.
- (2) 교육훈련의 평가는 개별, 부서별 또는 도급업체에서 주관한 교육의 경우에는 수 급업체별로 실시할 수 있다.
- (3) 교육훈련성과 평가결과, 일정기준 이상의 근로자 등에게는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다.
- (4) 모든 교육훈련의 성과측정과 결과 평가 시에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 대표를 참여

시킬 수 있다.

- (5) 제5.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교육훈련을 이수한 근로자에 대하여 제8.1항 (1) 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일정 기준 미만의 근로자와 공정안전교육훈련을 불참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재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- (6)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 등에게는 교육필증을 발급하고, 교육필증 미소지자는 현장출입을 금하게 할 수 있다.

## 8.2 교육훈련 결과보고서

- (1) 교육훈련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<별지 서식 1>의 교육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(가) 교육훈련일시
- (나) 교육훈련장소
- (다) 참석인원(참석자 명단 및 서명 포함)
- (라) 강사
- (마) 교육훈련내용(교육훈련 자료 포함)
- (바) 교육훈련방법
- (사) 교육훈련성과 및 평가 결과
- (아) 기타
- (2) 안전관리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훈련을 종료한 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<별지 서식 2>의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(가) 교육훈련 이수인원
- (나) 교육훈련과목 및 교육훈련 내용
- (다) 교육훈련일시, 장소, 횟수 및 시간
- (라) 교육훈련방법 및 강사
- (마) 교육훈련성과(계획 대 실적 대비) 및 평가결과

# KOSHA GUIDE P - 96 - 2020

- (바) 문제점 및 개선방향
- (사) 기타
- (3)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# <별지 서식 1>

안전보건교육훈련 일지							
일 시				장 소			
과 목				강 사			
교육방법							
교육내용							
참석자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
평가결과							
비고							

# <별지 서식 2>

卫=		
일 시	장	소
과 목	강	사
교육방법	교육 인:	
교육시간	횟=	수
교육내용		
교육성과		
평가결과		
문제점		
개선방향		
비고		